

초치하여야 하며, 타종교를 신봉하는 재소자의 경우에도 그들의 종교적으로 인정된 날에도 작업을 시켜서는 안된다.

제16조(종교서적) 내무부장관이 교도소에서 사용하도록 승인한 자신의 종파에 속한 종교서적은 재소자가 개인적으로 온당하게 사용하는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醫療 등

제17조(의료봉사) (1) 교도소 의무관은 소속 교도소 재소자들의 심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

(2) 의무관을 만나고자 하는 재소자들의 요구는 그 요청을 받은 교도관이 기록하여 의무관에게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3) 의무관은 임의로 다른 의사와 상의할 수 있으며, 중대한 수술을 하기 전에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여야 한다.

(4) 미결수용자가 자비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를 원할 경우, 소장은 그 요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된다면 의무관과 상의하여 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진료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질병 및 상태) (1) 의무관은 재소자가 계속된 구금 또는 그(상태에) 따라 생명에 위험을 초래케 할 정도로 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지체없이 자신의 의견을 첨부한 보고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의무관은 정신상태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재소자에 대하여는 특히 주목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요주의 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의무관은 재소자가 자살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당해 재소자를 특별한 관찰에 부해야 한다.

제19조(질병 및 사망 통보)

(1) 재소자가 사망, 중환 또는 중상을 입거나, 정신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될 경우에는 소장은 당해 재소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즉시 그 재소자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당해 재소자가 통보를 요청한 자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2) 재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장은 즉시 관할내 사체 김시관과 방문자 위원회에 통보하고 내무부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4. 厚生 및 作業

제20조(의복) (1) 미결 재소자에게는 자신의 사복이 적절하고, 단정한 경우 그에게 사복을 착용케 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부속하여 이 규정은 기결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미결 재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미결 재소자에게는 시설밖으로부터 충분하고 청결한 의류를 차입 받을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2) 기결 재소자에게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 보

온 및 건강에 알맞는 의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의류에는 필요하다면 취업장에서 착용하기에 적당한 보호의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이 법 제38조 (3)의 규정에 따라 기결 재소자는 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의류를 착용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의류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제21조(음식물) (1)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 재소자는 자변 또는 친지의 부담으로 음식물을 공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그에 부속하여 기결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미결재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결 재소자에게는 의무관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급여되는 음식물 이외에 다른 것을 허가하지 못한다.

(3) 기결 재소자는 의무관의 서면에 의한 처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급여하는 음식보다 적은 분량의 음식물을 급여하여서는 안된다.

(4) 급식되는 음식물은 위생적이고 영양가가 충분해야 하며 또 잘 조리되고 다양한 음식물에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야 한다.

(5) 의무관은 음식의 조리 전후에 정기적으로 음식물을 검사하여야 하고 질이나 양에 있어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 이 규정의 음식물에는 음료수를 포함한다.

제22조(주류 및 담배) (1) 재소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분량을

기재한 의무관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알코올류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재소자는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특전에 의하거나, 소장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우거나 소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23조(취침설비) (1) 재소자의 구금을 위한 거실의 경우 행형법 1952. 제14조에 따른 방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어떤 거실도 재소자를 위한 취침 설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정 요건에는 거실에서 동시에 취침하거나 수용될 재소자의 최대 수용인원이 명시되어야 하며,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명시된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침대 및 침구) 재소자에게는 보온이나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침대나 침구가 각기 제공되어야 한다.

제25조(특별 편의설비) 소장 또는 방문자 위원회는 미결 재소자의 신청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미결 재소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a. 그러한 미결 재소자에게 적절한 거실 및 침구를 사용도록 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물품 이외에 추가 또는 별도의 물품 제공 및 소장이 승인한 개인가구 또는 용품을 자변으로 구입 소지.

b. 자기방 또는 사동을 정리하는 의무 및 그와 유사한 의무

이행의 경감.

제26조(위생) (1) 모든 재소자에게는 건강 및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화장실 용품이 공급되어야 하며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교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소자는 일정한 시기에 몸을 씻고, 입소시 또는 그 후에는 적어도 수1회 온수 목욕을 하여야 한다. 남자의 경우 소장 또는 의무관에 의해 허가 또는 제외되지 않는한 매일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하여 면도를 하거나, 적어도 단정히 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이발을 하여야 한다.

단, 미결 재소자는 의무관이 건강 또는 청결을 이유로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발 또는 기르고 있는 턱수염, 콧수염을 면도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3) 여자 재소자는 의무관이 건강이나 청결을 이유로 그 필요성을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승락 없이 단식하지 못한다.

제27조(일상운동) (1) 실외작업에 출역하지 않거나 개방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재소자에게는 일기가 허용하는한 매일 1시간이상 실외에서 운동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신체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은 실내에서 시킬 수가 있다. .

(2) 내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시간을 1일 30분으로 단축 시킬 수 있다.

(3) 의무관은 모든 재소자에 대하여 운동 및 신체훈련에 관한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 의료상에 기인하여 재소자

의 어떤 활동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제28조(작업) (1) 기결 재소자는 1일 10시간 이내 유용한 작업에 취업하여야 하고 가능한한 거실외의 작업장에서 다른 재소자와 공동으로 작업토록 조치되어야 한다.

(2) 의무관은 재소자에 대하여 의료상의 이유로 작업을 면제 할 수 있다. 어떠한 재소자도 의무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그 런 종류의 작업이 아닌 작업에 취업시켜지는 안된다.

(3) 어떠한 재소자도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종류의 작업에 취업시켜지는 안된다.

(4) 어떠한 재소자도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재소자나 직원을 위해서, 또는 어떤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작업에 취업할 수 없다.

(5) 미결 재소자는 청원에 의하여 기결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될 수 있다.

(6) 재소자는 통상적으로 또는 특정한 경우와 관련하여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자신들의 작업에 대한 노임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5. 教育 및 福祉

제29조(교육) (1)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교육상의 편의로 부터 이득을 얻는 것이 가능한 모든 재소자는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2) 야간학급의 제과정은 모든 교도소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여가 시간에 통신 교육이나 독학

에 의한 교육, 또는 수공예 작업의 향상을 희망하는 재소자에게는 마땅한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문맹자의 교육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통상적으로 할당된 작업 시간에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제30조(도서관 장서) 모든 교도소에는 도서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재소자에게는 도서관의 도서를 이용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31조(외부와의 교통) (1) 재소자 및 그 가족 쌍방에게 최선의 권익의 옹호를 위한 바람직스러운 관계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주어져야 한다.

(2) 재소자에게는 가족을 위해 또는 본인 자신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소장이 인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또는 교도소 이외의 단체와의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것이 장려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제32조(갱생보호) 재소자가 형을 복역하는 초기부터 마땅한 갱생보호단체와 협의하여 재소자의 장래문제와 석방시 또는 그 후에 그에게 주어질 조력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6. 書信 및 接見

제33조(통상적인 서신 및 접견) (1) 내무부장관은 규율 및 질서유지, 범죄의 방지 또는 타인을 위하여 재소자와 다른 사람

간에 허가되는 통신에 대하여 일반적 또는 특별한 경우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2)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소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외부인 또는 그 외부인과 함께 있는 자와 상호 통신하는 것이 허가 될 수 없다.

(3) 이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소자에게, 또는 재소자로부터 오가는 모든 서신이나 통신은 소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자에 의해 검사될 수 있다. 그리고 소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그 내용이 적절치 못 하거나 길이가 합당치 못한 경우 이를 중지 시킬 수 있다.

(4) 내무부장관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재소자에 대한 접견은 직원의 시선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5) 이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 내무부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재소자에 대한 모든 접견은 직원이 들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 내무부장관은 통상적으로 또는 어떤 접견의 종류와 관련하여 재소자를 접견 할 수 있는 일자와 시간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제34조(개인의 서신 및 접견) (1) 미결 재소자는 내무부장관이 통상적으로 또는 특별한 경우에 지시하는 범위나 조건에 따라 미결 재소자가 원하는 바대로 서신의 수발이나 접견을 할 수 있다.

(2) 기결 재소자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주어진다.

a. 교도소 수용시의 서신수발 또는 그후 1주일에 1회 서신

수발을 할 수 있다.

b. 4주에 1회 접견을 할 수 있다.

(3) 소장은 재소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서신이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4) 소장은 접견의 권리를 가진 재소자에 대하여 접견대신에 서신을 수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5) 소장은 독거구금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접견에 관한 재소자의 권리를 연기시킬 수 있다.

(6) 방문자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소자에 대하여 서신 또는 접견의 회수를 초과하여 허가 할 수 있으며, 또 접견시 지정된 시간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7) 내무부장관은 어떤 재소자에 대하여, 또는 재소자의 급별에 따라 접견과 서신을 추가로 허가 할 수 있다.

(8) 재소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해 가족 또는 친지 이외의 자와의 접견은 할 수 없다.

(9) 이 법의 다음 조문 이하의 규정에 따른 서신 또는 접견은 이 규정이 취지하는 서신 또는 접견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35조(경찰관의 방문) 경찰관은 경찰서장에 의한 또는 경찰서장을 대리하여 발부된 명령서를 제시하고 접견을 희망하는 재소자를 방문할 수 있다.

제36조(석방 보증) 신병인수 보증인이 없거나 또는 지불할 돈이 없어 교도소에 유치되어 있는 재소자는 그 석방을 보증할 신병 인수인의 확보 또는 금전지불을 위하여 친족 또는 친지와

통신을 행하거나 평일날 일정한 시간에 접견을 할 수 있다.

제37조(변호인) (1) 민사 또는 형사사건의 소송 당사자로 있는 재소자의 변호인에게는 그 절차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재소자와 접견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준비 되어야 하며,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의 시선내에서 하되 교도관이 청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2) 재소자의 변호인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입회하에 법률적 사무에 대하여 재소자와 접견할 수 있다.

제37조A(법적절차와 관련한 별도시설) (1) 어떤 소송절차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재소자는 당해 절차와 관련하여 그의 변호사와 통신할 수 있으며, 소장은 그와 같은 통신이 소송절차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그런 통신은 이 법 제33조(3)에 의하여 검열 또는 중지될 수 없다.

(2) 재소자에게는 요구에 따라 진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필기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3) 내무부장관이 특수한 경우에 취한 지시에 따라 앞에 언급된 재소자 또는 그를 대리한 자에 의하여 선정된 의사에게는 당해 절차와 관련하여 그를 진찰하기에 적합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 경우 직원이 들을 수 없는 상태하에서, 그러나 시선내에서 행하여 질 수 있다.

(4) 내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재소자는 민사 소송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 관련한 법률적 조언을 구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같은 절차의 착수를 요구할 목적으로 변호사와 통신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矯正資料

英國行刑法紹介(下)

李 正 揆

(法務部 矯政課 矯監)

〈目 次〉

第1章 受刑者

1. 總則
2. 宗教
3. 醫療 等
4. 厚生 및 作業
5. 教育 및 福祉
6. 書信 및 接見
7. 移送, 記錄, 所有物

8. 特別統制 및 戒具使用

9. 規律違反
10. 其他 特殊한 收容階層
11. 死刑囚의 處遇

第2章 矯導官

- 第3章 矯導所 來訪者
第4章 矯導所 訪問者 委員會
第5章 捕則

7. 移送, 記錄, 所有物

제38조(교도소 밖의 수용) (1) 구금하에 교도소에 입소하거나, 교도소에서 나오는 재소자는 일반인이 보지 못하도록 가능한 노출이 적어야 하며, 호기심과 모욕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교도소 외부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는 재소자는 행형법 1952. 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교도관 또는 경찰관의 계호하에 두어야 한다.

(3) 구금하에 법원으로 이송되는 재소자는 사복 또는 행형법 1952에 적용받는 그런 시설에서 입는 옷과는 다른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39조(수검) (1) 모든 재소자는 구금될 때, 교도소에 입소할 때 수검을 받아야 하고 그후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교도관에 의해 수검을 받아야 한다.

(2) 재소자는 은익물품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에 따라 수검을 받아야 한다.

(3) 재소자는 다른 재소자가 보는 곳에서 의복을 벗거나 또는 수검을 받지 아니한다.

(4) 재소자는 동성의 교도관에 의해서만 수검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기록 및 촬영) (1) 각 재소자의 개인적 기록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2) 모든 재소자는 입소시 사진을 촬영하여야하며, 사진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제41조(재소자의 소지품) (1)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 재소자는 방문자 위원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방문자 위원회에 의해 심사되고 있는 것으로서 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 신문, 필기구 기타 다

른 직업훈련에 사용되는 것을 자변으로 구입하여 스스로 소지할 수 있다.

(2) 현금 이외의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소지하고 있으나 자기 용도로 허가되지 아니하는 것은 소장의 보관하에 두어야 한다. 재소자의 영치물의 목록은 기록 유지 되어야 하며, 재소자가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3)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휴대한 현금은 소장이 관리하는 구좌에 불입되어야 한다. 그 금액은 당해 교도소 장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3A) 재소자가 교도소를 출소하거나 사망한후 3년이상의 기간동안 청구하지 않고 남겨진 재소자의 소유물은 어떤 것이든 판매 또는 처분될 수 있으며, 판매수익금은 전국 범죄자 보호 및 정착 위원회에 그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불되어야 한다.

(4) 소장은 수용후에 재소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부정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제42조(우송된 금품) (1) 수령자에게 우송된 금품(서신 또는 기타 통신문 이외)은 이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재소자에게 처리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2) 현금은 소장의 판단에 따라

- a. 이 법 제41조 (3)에 따라 처리하거나
- b. 우송인에게 반송 또는
- c. 우송인의 성명과 주소가 불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에

따라 전국 범죄자 보호 및 정착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여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에 있어서는 그 재소자에게 입금이 되면 고지하여야 하며, 만일 그가 그돈으로 충당하는 것을 반대하지 아니하면 그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청산하도록 해야한다.

(3) 유가증권은 소장의 판단에 따라

- a. 교도소에서 재소자에게 전달 또는 그의 소유물과 함께 영치하거나
- b. 송부인에게 반송 또는
- c. 현금화하여 이 규정 (2)에 따라 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4) 이 법에 규정한 어떠한 물품이라도 소장의 판단에 따라

- a. 재소자에게 전달 또는 그의 소유물과 함께 영치하거나
- b. 송부인에게 반환 또는
- c. 송부인의 주소·성명이 불상 또는 물품의 성질상 반환하는 것이 부적당 한 경우에는 매각처분하여 이 규정 (2)에 따라 판매수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特別統制 및 戒具使用

제43조(혼거수용의 제외) (1) 질서유지 및 규율확립을 위하여 재소자 자신을 위하여, 통상적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재소자를 타인과 혼거수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할 경우 소장

은 재소자를 혼거수용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

(2) 재소자는 방문자 위원회 위원 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이 규정에 의거 24시간을 초과하여 혼거수용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주어진 권한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매1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3) 소장은 자신의 판단에따라 전 항의 재소자에게 혼거수용 재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의무관이 의료상의 이유로 이를 권고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4조(실력행사) (1) 재소자를 제호하는 교도관은 불필요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재소자에게 실력행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정도 이상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교도관은 고의적으로 재소자를 자극하는 태도의 행동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일시구금) (1) 소장은 반항적 또는 폭행가능한 재소자를 특별실에 일시 구금토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재소자에게 징벌의 수단으로서, 또는 반항 및 폭행등의 행위를 중지한 후에는 특별실에 수용할 수 없다.

제46조(계구의 사용) (1) 소장은 재소자가 자해 및 타재소자를 해치거나, 기물손괴 또는 질서 파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저지하기위해 계구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2) 전 항의 명령에 대한 고지는 지체없이 방문자 위원회 위원 및 의무관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3) 전 항의 통보를 받은 의무관은 소장에게 그 명령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고 해야하고 소장은 의무관의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4) 재소자는 필요이상 시감 되어서는 안되고, 방문자 위원회 또는 내무부 직원(교도관이 아닌자)에 의한 서면으로된 지시없이 24시간이상 계속 시감 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지시에는 시감 사유,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5) 전 항에 의한 계구사용시 특이사항은 즉시 기록되어야 한다.

(6) 호송중 구금의 확보 및 의료상 이유로 의무관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목적으로 계구를 사용할 수 없다.

(7) 계구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제식에 의해야 하고, 내무부장관이 규정한 사용방법, 조건 등에 따라 계구가 사용되어야 한다.

9. 規律違反

제47조(규율위반) 재소자가 다음의 경우 범법행위로 간주한다.

- (1) 폭동 또는 타재소자로 하여금 폭동을 야기 하도록 선동하는 경우
- (2) 직원에 대한 심한 폭력행위를 한 경우
- (3)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해 심한 폭력행위를 한 경우.
- (4) 협박 행위를 한 경우

(5) 교도소 또는 법정 구금장소로 부터의 도주행위

(6) 교도소 내외를 불문하고 지정된 장소를 허가없이 이탈한 경우

(7) 불허 물품을 거실이나 사동 또는 자신의 소지품속에 은 익하거나 그러한 물품의 입수를 시도한 경우

(8) 불허 물품을 타재소자와 수수행위

(9) 자신이 사용토록 허가된 물품을 허가없이 타재소자와 매매 또는 양도행위

(10) 타재소자 또는 교도소에 속한 물품의 부당취득 및 불법 소지

(11) 교도소의 설비 및 본인 소유의 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고의적 손괴 또는 손상을 가한 경우

(12) 교도관에 대한 허위 또는 악의에 의한 신고행위

(13) 교도관 또는 교도소 방문자에 대한 불손한 행위

(14) 악담, 무례한 언어, 위협 기타 부적당한 언어의 사용

(15) 언어나 행동 등 자세에 있어서 상스러운 행위

(16) 타당한 이유없이 계속적인 불복신청

(17) 취업증인자가 태만, 부주의, 게으름 등의 경우 또는 취업거부 행위

(18) 적법한 명령이나 교도소 내부규칙 또는 규율의 준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19) 전 항의 위반사항을 행하기 위한 시도의 경우

(20) 어떤 방법으로든 질서 및 규율을 위반한 경우

(21) 이 법 제6조에 의거 일시석방된 재소자가 지정된 기일에 환소하지 않거나 일시석방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제48조(규율위반 행위 인지) (1) 재소자가 규율위반으로 인지된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 되어야 한다.

(2) 규율 위반으로 인지된 재소자는 조사가 종결되어 처분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타재소자와 격리되어야 한다.

(3) 모든 인지 사항은 즉시 소장이 취조하여야 한다.

(4) 모든 인지 사건은 특별한 경우이외에 원칙적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인지된 익일에 취조되어야 한다.

제49조(조사중인 재소자의 권리) (1) 재소자가 규율위반으로 인지된 경우 가능한한 빠른기한내에 또는 어떤경우에는 소장에 의한 취조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에게 인지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재소자의 인지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본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거나 변호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제50조(소장의 처분) 소장은 이 법 제51조, 제52조, 제52조 A에 따라서 규율위반 인지사건에 대해 다음 처분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주의

b. 28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이 법 제4조에 규정한 특전의 상실

c.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공동작업 금지

d. 28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작업보수의 상실

- e.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독거수용
- f. 28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형기삭감의 상실
- g. 다음 사항 중 이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은 재소자의 경우 일정기간 그 권리의 상실
 - (i) 이 법 제21조 (1)에 명시된 음식 및 음료수를 공급 받을 권리
 - (ii) 이 법 제41조 (1)에 명시된 물품 소지의 권리
- h. 이 법 제 20조 (1)에 의거 자신의 의복을 착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재소자가 도주 또는 도주를 시도한 경우 일정기간 그 권리의 상실

제51조(중대한 규율위반) (1) 재소자가 다음 사항의 규율을 위반한 경우.

- a. 교도소 또는 법정 구금장소로 부터의 도주 또는 도주시도
- b. 교도관에 대한 폭행
- c. 교도관 이외의 자에 대한 심한 폭력행위

소장은 자신이 그 인지사건을 기각하지 않는 한 즉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 해야하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방문자 위원회에 그 인지 사건을 위임해야 한다.

(2) 재소자가 중대하거나 되풀이 된 규율위반(본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율 위반)으로 인지된 경우 소장의 처분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소장은 그 인지사건을 조사한 뒤 방문자 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3) 본 규정에 의거 인지사건이 방문자 위원회에 위임 되었

을 경우 그것에 관하여 의장은 2명이상 5명이내의 위원이 참석하는 특별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4) 전 항에 의거 소집된 위원회는 인지사건을 취조해야 하고 규율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이 법 제52조 A에 의거 다음 처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경고
 - b. 이 법 제4조에 규정된 특전에 대한 일정기간 상실 또는 연기
 - c. 56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공동작업 금지
 - d. 56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작업보수의 상실
 - e. 56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독거구금
 - f. 180일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형기삼각의 상실
 - g. 다음 사항 중 이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은 재소자의 경우 일정기간 그 권리의 상실
 - (i) 이 법 제21조 (1)에 명시된 음식 및 음료수를 공급 받을 권리
 - (ii) 이 법 제41조 (1)에 명시된 물품 소지의 권리
 - h. 이 법 제20조 (1)에 의거 자신의 의복을 착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재소자가 도주 또는 도주를 시도한 경우 일정기간 그 권리의 상실
- (5) 내무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인지사건을 방문자 위원회에 위임하는 대신, 자신에게 위임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내무부 공무원(교도관이 아닌자)이 그 인지사건을 취조해야하고 규율위반 사항이 입증되면 전 항에 규정된 처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조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52조(특히 중대한 규율 위반) (1) 재소자가 다음 사항의 규율위반 중 한가지 이상으로 인지된 경우에는

- a. 폭동 또는 폭동 선동
- b. 직원에 대한 심한 폭력행위

소장은 즉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방문자 위원회에 그 인지사건을 위임해야 한다.

(2) 이 법에 의거 동 위원회에 인지된 사건이 위임 된 경우, 동 위원회 의장은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최소한 2명의 치안판사 포함)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3) 전 항에 의거 소집된 위원은 인지사건을 조사해야하고 규율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이 법 제52조A에 따라 이 법 제51조 (4)에 명시된 사항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형기삭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8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제52조A(연소자의 규율위반) 범법행위 당시 21세 이하인자(내무부장관이 형사 사법법 제13조 (1)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자 와 같은 처우를 받도록 지시한 이외의 자)로서 교도소에 수감된자에 의한 규율위반의 경우,

- a. 이 법 제50조의 b, d 각 항의 28일 대신에 14일을 석용 한다.

b. 이 법 제51조 (4)는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i) 동 규정 b항에서 "일정기간"이란 용어는 "28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이란 용어를 대신한다.
 - (ii) 동 규정 c 및 d항의 "56일"을 "28일"로 대신한다.
 - (iii) 동 규정 e항에서 "56일"을 "7일"로 대신한다.
 - (iv) 동 규정 f항에서 "180일"이란 용어 다음에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거나 직원을 폭행하는 경우 및 기타 다른 규율 위반의 경우 90일"이라는 용어를 삽입한다.
- c. 이 법 제52조 (3) "초과할 수 있다" 다음에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용어를 삽입한다.

제53조(특별 처분과 관련한 조항) (1) 재소자의 작업보수 정지처분은 28일 또는 어떤 경우에는 56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한 기간동안 재소자의 모든 작업보수의 상실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재소자의 작업보수의 일부(1/2이상)를 상실케 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2) 독거수용처분은 의무관이 그러한 처분을 집행하는데 재소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한 집행할 수 없다.

제54조(형기삭감의 사전상실) (1) 구류 처분자 또는 재판을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위해 구금된자에 의한 규율위반의 경우에 형기삭감 상실의 처분은 그 재소자가 형을 받지않은 것을 불문(규율위반 당시 형의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포함)하고 취해

질 수 있다.

(2) 전 (1)의 처분은 징역형 선고의 경우와 형사사법법 1967
(a) 제67조에 의거 규율위반 행위가 행해진 때를 포함하는 시
기까지 경감된 구금형이 부과된 청소년에게만 효력을 가진다.

제54조A(청소년 구금형의 징역형 전환) 청소년 구금형에 처
해진 재소자와 형사 사법법 1982. 제13조에 의해 내무부 장관의
훈령에 의해 그 기간동안 징역형에 처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처
우되는 재소자의 경우에 전술한 훈령이 있기 이전에 규율위반
행위로 그에게 부과된 처분은 그것이 소멸되거나 면제 되지 않
으면 이 법 제51조에 의거 처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효력
을 가진다.

제54조B(징계처분 : 경과규정) (1) 형사사법법 제17조 (4)에
의거 1983. 5. 24 구치, 석방 보호 관찰의 목적으로 징역형이 청
소년 구금형으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처우를 받게된 재소자의
경우 보스탈 규칙 1964(a) 제49조 및 50조에 따라 그 날자 이
전에 그와 관련하여 취해진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어떤 처분은
그것이 소멸되거나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 이 법 제50조 및 제
51조에 따라 각각 처분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조항 (2)의 적용
을 받는다.

(2) 보스탈 규칙 1964. 제49조(e) 및 제50조(4) (e)에 따른
일정기간 동안 강급, 상위급으로의 진급연기 등의 처분은 이 법
에 의거 같은 기간동안 형기삭감의 상실과 같은 처분을 한 것
과 마찬가지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55조(중단된 처분) (1)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건으
로서 징벌처분을 행할 권한은 재소자가(그 지시의 날로부터 6
개월이내의 기간)그 지시에 명시된 기간동안 다른 규율위반 행
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장관의 지시가 다음 (2)항에 의거 주어
지지 않는한 그 처분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지시를 할 권한을
포함한다.

(2) 전 항에 의거 지시사항에 명시된 기간동안 규율위반 행
위를 범한경우 그 범법행위를 다루는자 또는 위원회는,

- a. 중단된 처분이 효력을 발할 수 있다고 명할 수 있다.
- b. 중단된 처분의 기간 또는 양을 감경 할 수 있고 그것이
감경된 바 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명령 할 수 있다.
- c. 변경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기간에 있어서
일정 기간으로 대체 함으로써 본래의 명령을 변경 할 수
있다.
- d. 중단된 처분과 관련하여 지시를 아니 할 수 있다.

제56조(처분의 면제 및 완화) (1) 내무부장관은 자신의 결정
에 따라 보다 중하지 않는 다른 처분으로 대체 하거나 징벌처
분을 면제 또는 완화 할 수 있다.

(2)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소장은 자신이 취한 처분을
면제 또는 완화 할 수 있고 방문자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완화 할 수 있다.

제57조—제62조 삭제

10. 其他 特別한 收容階層

제63조(모욕죄를 범한 재소자 등) (1) 법정 모욕죄를 범하였거나, 해야할 일을 하지 않했거나 실패한 경우,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여 구금 또는 재판에 부하여진 재소자는 이 법 제20조 (1) 및 제34조 (1)에 따라 미결 수용자와 같은 특전을 부여 받는다.

(2) 그와 같은 재소자는 이 법 제3조의 목적에 따라 분리급으로 처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재소자들이 원한다면 다른 부류의 재소자와 혼거수용을 허락 할 수 있다.

(3) 법정 모욕죄를 범하여 1개월 이상의 구금 또는 인치의 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는 이 법 제5조의 목적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징역형을 복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우되어야 한다.

제64조-제71조 삭제

11. 死刑囚의 處遇

제72조(앞 조항의 적용) 이 규정 앞 조항은 이 법 제73조-제76조 및 사형의 선고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제73조(수검) 사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수검하여야 하며, 그가 소지 하기에 위험하거나 부적당한 물건은 모두 압수하여야 한다.

제74조(수용) (1) 사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는 독거실에 격리 수용 해야하고, 타재소자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2) 사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는 주야를 불문하고 2명의 직원이 계호하여야 한다.

(3) 사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는 작업을 시킬수 없다. 그러나 본인이 원한다면 자신의 거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킬 수 있다.

(4) 이 법 제75조에 따라 교도관이나 방문자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은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사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 접근 할 수 없다.

제75조(접견) (1) 교회사와 교도소 목사의 사형선고 재소자 면담을 제외한 모든 면담은 교도관의 시선내에서 또 교도관의 청취 가능한 곳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2) 그와 같은 재소자는 내무부장관 또는 방문자 위원회 위원의 서면에 의한 지시에 의하여 그가 면담하기를 희망하는 친척, 친지 및 변호사 또는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허가된 자와 면담할 수 있다.

(3) 교회사는 그와 면담하기를 희망하거나 영국교회에 속한 모든 사형 선고를 받은 재소자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중 영국교회 이외의 종파에 속한

재소자의 경우 그 종파의 목사는 그 재소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제76조(외부 교통) 사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는 자신의 변호사나 친척, 친지와의 연락에 필요한 모든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第2章 矯導官

제77조(교도관의 일반 의무) (1) 모든 직원은 의무적으로 이 법 및 교도소의 각종 규칙, 규정 등을 준수하고 소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하며,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소장을 보좌하고 지원해야 한다.

(2) 직원은 자신이 알게된 비위행위나 부당행위에 대해 소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사례금 수수금지) 교도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사례금, 선물 등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79조(직원에 대한 검색) 직원은 교도소내에서 자신에 대한 검색을 소장이 명령할 경우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0조(재소자와의 거래) (1) 교도관은 내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재소자와 또는 재소자를 위하여 상거래 또는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2) 교도관은 허가없이 어떤 물건을 불문하고 재소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할 의도로 일정 장소에 놓아두거나, 고의로 재소자를 위해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것을 목인 또는 그런 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시도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제81조(전 재소자와의 접촉 등) 교도관은 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전에 수용되었던자 또는 그의 친척, 친지 그리고 현 재소자의 친척, 친지를 접촉해서는 안된다.

제82조(언론매체와의 교통) (1) 어떠한 직원도 직·간접으로 언론사의 대표나 관련자에게 그의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허가 없이 연락해서는 안된다.

(2) 어떠한 직원도 허가없이 행형법 1952에 적용받는 교정시설의 행정이나 재소자에 관련된 결정 사항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제83조(책임구역) 교도관은 자기에게 할당된 책임구역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84조(징계규정) 내무부장관은 교도관 또는 특정직원과 관련하여, 효력을 갖는 징계 규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규정 내에서는 징계 처분 할 수 있는 비위 행위와, 그 비위 행위에 대한 처분, 그 처분을 다루기 위한 절차를 규정 할 수 있다.

第3章 矯導所來訪者

제85조(금지된 품목) 어떠한 사람도 허가없이 재소자가 소유
케 할 의도로 금전, 의류, 음료, 담배, 편지, 종이, 책, 도구 등
기타 어떤 물건 이든지간에 교도소내의 일정장소에 갖다 두거
나, 직접 전달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물건들을 교도소로 또는
밖으로 반입, 반출 등 운반의 행위를 일체 금한다.

제86조(사람 및 차량의 통제) (1) 교도소를 출입하는 어떠한
사람이나 차량이라도 정지하여 검색을 받게할 수 있다.

(2) 소장은 행형구역을 떠나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에게 교도소로 부터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87조(참관) (1) 법령에 의하거나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
하지 아니하고서는 외부인의 교도소 참관을 허가할 수 없다.

(2) 교도소를 방문하는 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으며, 법령
에 의하거나 내무부장관의 지시없이 스케치 또는 재소자와 교
담을 할 수 없다.

第4章 矯導所訪問者 委員會

제88조(위원의 자격 상실) 교도소에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을 위한 계약에 관심을 가진자는 그 교도소의 방문자 위원회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제89조—제91조 삭제

제92조(방문자 위원회) (1) 행형법 1952. 제6조 (2)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임명한 교도소 방문자 위원회 위원은 3년 또는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임기를 가진다.

(2) 위원회가 처음 구성되었을 때 내무부장관은 위원중에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할 의장을 지명
한다.

(3) 전 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최초의 회의에서 위원회
는 위원중 한명을 당해년도 의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뒤 의장 유고시 신속하게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4) 위원회는 위원중 부의장을 지명 할 수 있고, 그는 의장
유고시 의장의 나머지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 한다.

제93조(위원회 절차) (1) 교도소 방문자 위원회는 한달에 1
회 교도소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만일 동 위원회가 회의
회수를 줄이는 것이 충분하다고 결의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에
8회 이상의 회의를 교도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법 제51조, 제52조의 위원 이외에 절차를
위하여 3인이상의 정족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회는 의사록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4) 위원회의 집행 절차는 위원의 유고나 어떤 위원의 임명
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94조(위원의 일반적 임무) (1) 교도소 방문자 위원회는 교

정행정, 재소자의 처우, 행형구역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져서는 안된다.

(2) 동 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이 요구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3) 동 위원회는 소장의 주의를 요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소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에게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동 위원회는 권력남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즉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교도관의 직무를 중단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5) 이 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이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위원회 및 위원은 규율에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95조(특별한 임무) (1) 교도소 방문자 위원회 및 동 위원회 위원은 재소자가 그들에게 어떤 불복 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청취해야 한다.

(2) 동 위원회는 재소자의 음식물이 수시로 위원에 의해 검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3) 동 위원회는 회원이 작성하였든지, 또는 기타의 자에 의해 작성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접수한 재소자의 건강(정신 또는 육체적)이 구금상태에 의해 해롭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는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제96조(교도소 방문자 위원회 위원) (1) 교도소 방문자 위원회 위원은 교도소를 자주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적어도 위원중 한명이 위원회의 회의개최 중간 시기에 교도소를 방문하도록 순번을 정해야 한다.

(2) 동 위원회 위원은 언제든지 교도소내 어떤곳이라도 갈 수 있고, 모든 재소자를 만나서 교도관의 입회없이 재소자와 상담할 수 있다.

(3) 동 위원회 위원은 교도소의 각종 기록물을 열람 할 수 있다.

제97조(연례보고) 교도소 방문자 위원회는 매년말에 내무부장관에게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권고 및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교도소 또는 교정행정의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第5章 捕則

제98조(소장대리) 교도소장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교도소의 다른 공무원에 대해 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이나 임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제99조(해석)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수형자”는 이 법 제63조에 의거 확정 판결된 재소자 또는

법정모욕죄를 범한자,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그 이행을 실패한 자, 금지된 사항의 준수를 어긴자이며, 미결 재소자는 그외의 자이다.

“소장”은 당분간 교도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변호사”는 한 재소자와 관련하여 그의 상담자 또는 변호인을 의미하고 그의 변호사를 대리하는 서기를 포함한다.

“공무원”이라 함은 교도관을 의미한다.

“교도소 목사”라 함은 교도소와 관련하여 행형법 1952의 제10조에 의거 당해 교도소에 임명된 목사를 의미한다.

(2) 이 법에서 영국교회의 관련사항은 웨일즈 교회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해석에 있어서 법 1889(A)는 그것이 국회법의 해석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해석에도 준용된다.

제100조(폐지 및 제외) (1) 이 법의 별항에 특정화된 규정은 이 법에 의해 폐지된다.

(2)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이 법에 의해 폐지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주어지거나, 부과된 임명의 승인, 권한, 인증, 조건, 지시, 제한은 이 법의 해당조항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주어지거나,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1조(법명 및 발효) 이 법은 행형법 1964로서 명명되고 공포된 후 14일 후에 효력을 발한다.

内務部長官

矯正資料

2825

(1997.10)

獨逸 바이에른주의 矯正制度

金丙柱

(京畿大講師, 法學博士)

〈目次〉

I. 構成	VII. 少年矯正
II. 矯正의 課題	IX. 少年拘禁
III. 矯導作業	X. 藥物中毒在所者の 處遇
IV. 在所者를 위한 職業訓練	XI. 矯正費用
V. 在所者를 위한 學科教育	XII. 人事
VI. 矯正緩和와 休暇	XIII. 自願奉仕要員
VII. 女子在所者の 矯正	XIV. 施設建築

編譯者註) 이 자료는 독일 바이에른주 법무부가 발간한 “Strafvollzug in Bayern: Ubersicht(Stand: Mai 1996)”라는 소책자의 내용 중 우리나라 행형에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在所者收容能力(1996. 5.)

(단위 : 수용능력, 자리)

전체 수용능력합계	10,920	
남자계 : 10,328	독거실	6,804
	혼거실	3,524
여자계 : 592	독거실	358
	혼거실	234

재소자수는 이미 수용능력의 한계를 초과했다. 특히 남자 재소자(미결구금, 자유형수형)의 경우 얼마전부터 실제 수용 능력의 100%를 넘어섰다. 이러한 사태발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의 동부접경지역 국가와의 국경개방 아래로 외국인 미결 구금자와 수형자의 급격한 증가 및 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금자수의 증가 때문이다. 현재 바이에른주 미결구금자의 55.1%가 외국국적 소지자이고, 재소자 전체의 외국인비율은 약 37.4%에 달한다.

1996. 3. 31. 당시 바이에른주의 교정시설에는 짐정적인 부재자수를 포함하여 약 11,250명에 달하며,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一日平均在所者數(1996. 3. 31.)

(단위 : 명)

자유형수형자 및 보안감호자	6,765
소년자유형수형자	580
성인미결구금자	2,865
소년미결구금자(21세까지)	440
기타(대체로 국외추방대기자)	600
합 계	11,250

I. 構 成

1. 概要

전체 바이에른주의 교정은 바이에른주 法務部(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가 관장한다. 여기에는 사법집행부(Abteilung 'Justizvollzug')가 설치되어 있다. 이 부서의 직무에는 교정의 조직, 교육 및 재교육을 포함한 인사문제, 전체 교정시설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시설건축, 교정에 관한 입법에의 관여, 재소자에 대한 학과교육 및 직업훈련 그리고 청원이나 고충의 처리 등이 있다.

법무부와 일선 교정시설간에는 중간적인 어떠한 관청(예컨대 교정국Strafvollzugsamt)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바이에른의 모든 교정시설을 매년 적어도 2회 이상 시찰하여 심사하는 이러한 감독관청과 일선 교정시설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과거에 이미 시험되었다. 이러한 긴밀한 접촉은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고 교정실무에 대한 법무부 당국의 밀착된 감독을 보장해준다.

2. 收容能力

바이에른주에는 38개가 넘는 교정시설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少年拘禁施設

소년구금(Jugendarrest)의 집행을 위하여 6개소의 구금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아우그스부르크, 밤베르크, 호프, 란다우, 뮌헨, 뉘른베르크

4. 成人矯正施設

"바이에른주 형벌집행계획(Vollstreckungsplan für das Land Bayern)"에는 관할 판사나 형사소추기관(검찰)에 의하여 체포된 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이나 자유형 또는 소년구금의 집행을 위하여 어느 교정시설이나 소년구금시설로 송치되어야 하는지가 규정되어 있다. 미결구금은 통상적으로 소송을 추행하는 검사가 주재하는 지역에서 집행된다. 중요한 미결구금시설은 뮌헨(약 1,630명 수용규모), 뉘른베르크(약 1,000명 수용규모), 아우그스부르크(약 250명 수용규모)에 있다.

자유형의 집행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초범자수용시설(Anstalt des Erstvollzugs)에는 지금까지 전혀(또는 아주 경미한 짜장 3개월 이내) 구금경험이 없는 자가 수용된다.
- 이보다 장기의 자유형수형자는 다음 시설에 수용된다.

북부바이에른 : St. Georgen-Bayreuth(931명 수용규모)
교도소

남부바이에른 : Landsberg am Lech(636명 수용규모)
교도소

- 구금경력(전과자)이 있는 수형자는 이른바 일반교도소

Riegelvollzug)라고 불리는 곳에 수용된다. 비교적 장기의 수형자는 Amberg(524명 수용규모), Kaisheim(451명 수용규모) 그리고 Bernau(814명 수용규모)교도소 등에 수용된다.

- 아주 장기의 수형자(5년 이상의 자유형, 종신형, 보안감호)는 Straubing교도소에 수용된다.
- 여자수형자는 대개 Aichach(351명 수용규모)교도소에 수용된다. 또한 일반교도소에 여자를 위한 특별한 구역을 시설한 곳으로는 München, Nürnberg, Aschaffenburg, Würzburg, Bamberg, Regensburg, Traunstein, Garmisch-Partenkirchen, St. Georgen-Bayreuth, Memmingen등의 교도소가 있다.
- 소년형벌은 Ebrach(345명 수용규모), Neuburg-Herrenwörth(138명 수용규모), Laufen-Lebenau(201명 수용규모)등의 소년교도소에서 집행된다. 소녀수형자는 Aichach소년교도소에 특별구역(36명 수용규모)을 두어 수용되고 있다.

소년형벌집행으로부터 제외된 소년수형자(소년사법법 제92조 제2항) 및 25세까지의 젊은 성인수형자를 위하여 그들의 연령과 성장수준에 상응하게 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 Niederschönenfeld소년교도소의 일정 시설을 젊은 남자성인수형자를 위하여 개축하였다. 그곳에서 활동하는 오랫동안 소년형벌집행의 경험이 있고 특별한 교육을 받은 교정직원들과 뛰어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은 젊은 수형자들의 특별한 요구를 상당한 정도 참작할 수 있게 해준다.

특별한 치료수단과 사회적 원호가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행형법 제9조에 따라 그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치료시설(Sozialtherapeutische Anstalt)로 이송될 수 있다. 바이에른주에는 1972년 이래로 41명 수용규모의 Erlangen 사회치료시설(모두 독거수용)이 있고 그 중 6실은 개방시설이다. 그밖에도 München 교도소에는 성범죄자를 위한 16명 수용규모의 사회치료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대규모의 병실구역(Krankenabteilung)도 Amberg, München, Nürnberg, Straubing(정신질환), St. Georgen-Bayreuth(결핵, 당뇨) 등의 교도소에 시설되어 있다.

I. 矯正의 課題

1977. 1. 1. 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형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수형자가 장차 사회적 책임하에 죄를 범하지 않는 생을 영위할 능력이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교정목표). 자유형의 집행은 또한 계속되는 범죄행위로부터 공공의 안전보호에 기여한다.”

이 규정은 행형상의 모든 책임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a) 자유형의 집행기간동안 수형자가 무엇보다도 재범을 하지 않고 그가 사회적 책임하에 미래의 인생을 준비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고,

b) 모든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안

전에도 유의하고 이를 위하여 일반공중이 또 다른 범죄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야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벌집행에 있어서 그리고 이때 부딪치게 되는 각종 결정에 있어서도 행위책임의 특별한 정도, 적정한 책임상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형벌목적(예컨대 법질서의 방위, 위하)도 교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들이 바이에른주 교정시설의 업무를 결정한다. 그것을 온전히 해내기 위해서는 교정실무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인력의 투입, 막대한 예산조치, 공중의 이해와 동참 등이 필요하다.

III. 矯導作業

수형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한 노력에는 규정된 교도작업,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훈련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의미있고 유용한 교도작업을 통하여 재소자는 자신의 작업을 토대로 하여 구축된 삶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하여 행형법은 수형자는(작업의무가 없는 미결구금자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적합한 작업을 해야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1조). 교정직원은 수형자에게 경제적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작업에 배당하고 이 때 그의 능력, 숙련도, 소질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제37조).

1. 作業의 種類

재소자는 소내의 직영작업, 소내에 설치된 사기업체의 작업, 적당한 경우에는 유계호 또는 무계호의 외부통근 등의 작업을 한다. 교정시설 자체를 위한 활동도 교도작업에 포함된다.

2. 投資

바이에른주 법무부는 재소자가 정기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건축 그리고 이를 위한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현재는 Amberg, Neuburg-Herrenwörth 등의 교도소에 교도작업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 건축되고 있다. 더 많은 공장과 작업을 위한 건축물이 Ansbach, Hof, Memmingen, Mühldorf a. Inn, München 등의 교도소에 건축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3. 作業收入

바이에른주 전체 각종 교도소에서 올린 작업수입의 발전추이는 다음과 같다.

年度別 作業收入 (단위 : Mio. DM)

1980	57.8	1988	70.1
1981	58.3	1989	71.5
1982	56.9	1990	74.6
1983	61.3	1991	77.9
1984	64.4	1992	76.8
1985	70.4	1993	71.7
1986	70.3	1994	73.5
1987	67.6	1995	76.9

4. 作業現況

1995년도의 경우 일일평균 수용인원 10,661명중에서 52.8%가 작업에 참여하였으나, 47.2%는 그렇지 못하였다. 작업불참비율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작업의무가 없는 미결구금자가 약 30% 포함된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다른 이유로 작업능력이 없는 수형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예컨대 질병, 노쇠).

5. 作業報酬

재소자는 법으로 규정된 작업보수를 받는다. 교육을 받는 경우는 사회법 제4책 제18조(§ 18 des Vierten Buches Sozialgesetzbuch)에 의거 전체 금액의 5%에 이르는 교육보조금을 받는다. 이러한 기준임금의 일당은 1996년도의 경우 9.91DM이고, 시간급은 1.29DM에 해당한다(작업수당은 시간급으로 지급된다).

작업보수는 재소자의 작업능력 및 작업에 따른 교도작업보수규정에 의거 5등급으로 나뉜다(기준임금의 75%, 88%, 100%, 112%, 125%). 따라서 이는 일당의 경우 7.43DM에서 12.39DM, 시간급의 경우 0.96DM에서 1.61DM 사이에 해당된다.

그밖에 기본급에 부가하여 능력수당(최고 30%까지), 불리한 근무시간대 작업수당(최고 5%까지), 어려운 작업조건에서 받는 작업수당(최고 5%까지), 규정된 작업시간대 외 초과시간작업수당(최고 25%까지) 등의 각종 특별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재소자들의 작업보수, 교육훈련보조비 그리고 용돈(자신의 귀책사유없이 교도작업을 하지 못한 재소자가 쓸 데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약간의 생활비) 등을 위하여 바이에른주가 지불한 비용은 1995회계년도의 경우 모두 1,530만마르크에 달했다.

현재의 교도작업보수 수준에서는 행형법에 따른 금액을 받는 재소자에 의하여 수용비용에 대한 기여도 상승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재소자는 매월 행형법에 규정된 금액의 3분의 2를 동법 제22조 소정의 구매를 위한 "수형생활비용(Hausgeld)"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액의 나머지 3분의 1은 재소자에게 필요한 생활비용의 보장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진 과도기적용비용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출소 후 처음 4주간을 위한 "과도기적용비용(Uberbrückungsgeld)"으로 적립된다. 목표액이 모두 적립되면 이 3분의 1의 금액은 재소자에게 되돌려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나, 그것은 직접 占有(所持)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제22조에 규정된 구매를 위하여 사용될 수도 없다.

6. 作業時間

재소자의 정기적인 週間 작업시간은 공직자의 정기적인 週間 노동시간에 상응하게 정해진다.

7. 失業保險

정역에 임하는 재소자는 노동촉진법(Arbeitsförderungsge-

setz)의 적용범위에 들어간다. 연방노동청(Bundesanstalt für Arbeit)에 대한 기여금은 전적으로(근로자 및 사용자의 기여금분담을 포함하는) 교정시설 관할의 주가 부담한다. 기여금의 산정은 사회법 제4책 제18조에 의거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摘制된 작업보수액을 기초로 한다.

만약 재소자가 이 금액을 근로자로서 받게된다면, 행형법 제19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소자의 작업보수로부터는 기여금에 대한 재소자분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다. 재소자의 기여금을 위하여 연방노동청에 바이에른주가 지급한 액수는 1995년도의 경우 모두 1,540만마르크(1990년은 890만마르크)에 달했다.

IV. 在所者를 위한 職業訓練

자유세계에서의 시험기회를 위한 기초로서 재소자의 직업훈련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4년 바이에른의 교정시설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단지 성인수형자의 약 56%, 소년수형자의 약 27%만이 직업훈련을 수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금 직업훈련분야에서 많은 분발이 요구됨을 확인해준다. 바이에른의 교정은 이러한 과제를 오래전부터 설정하고 오늘날의 수요에 충분히 상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1996년도의 경우 바이에른의 교도소들에는 모두 832명 수용규모의 양질의 직업훈련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525자리는 성인, 307자리는 소년을 위한 것이다.

비교적 큰 교도소에는 대개 자체내에 교육을 위한 공장이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개별 교도소	기초교육
Neuburg-Herrenwörth교도소	건설기계기술자
Ebrach, Laufen-Lebenau, Neuburg-Herrenwörth 등의 교도소	건설기술
Kaisheim교도소	전자공학교육
Kaisheim교도소	에너지전자기술자
Niederschönenfeld교도소	전자기술
Ebrach교도소	염색기술 및 실내장식
St. Georgen-Bayreuth, Laufen-Lebenau, Neuburg-Herrenwörth, Niederschönenfeld 등의 교도소	건물청소
Ebrach, Laufen-Lebenau, Neuburg-Herrenwörth, Nürnberg(Lichtenau 소외지부) 등의 교도소	목재가공분야의 기초교육
St. Georgen-Bayereuth교도소	자동차정비기술
St. Georgen-Bayereuth교도소	창고관리자
Laufen-Lebenau교도소	造景技術
St. Georgen-Bayreuth, Ebrach, Kaisheim, Laufen-Lebenau, Neuburg-Herrenwörth, Niederschönenfeld 등의 교도소	금속가공분야의 기초교육
St. Georgen-Bayreuth, Ebrach, Kaisheim, Laufen-Lebenau 등의 교도소	용접
Amberg교도소	목공
Niederschönenfeld교도소	세탁
Neuburg-Herrenwörth교도소	운송기계기술자
Landberg am Lech(Rothenfeld 소외지소)교도소	破壊技術者

그렇게 443명이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

교도작업 및 교도소경영에서도 (자물쇠공, 목공, 전기기술,

건설기술, 자동차정비, 인쇄, 제본, 재단 등) 399명 규모의 교육훈련이 실시된다. 그 밖에도 스크린인쇄과정, 컴퓨터전문과정 등과 같은 직업훈련도 실시된다.

V. 在所者를 위한 學科教育

상당히 많은 비율의 재소자들이 충분한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바이에른 교정은 재소자들이 학교교육을 뒤늦게나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대규모교도소에는 초등상급학교졸업을 위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실업교육강좌도 실업교육을 더 받아야 하는 소년재소자와 나아가 직업교육을 이수중인 성인재소자를 위하여 개설되어 있다. 교육부와의 합의에 의거하여 1980/81학년도부터 관할 구역내의 Sprengel직업학교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실업교육강좌가 실시되고 있다. 이 학교는 중립적인 졸업증서를 발부한다.

어떤 교도소에는 수형자가 방송통신교육과정을 이용하여 계속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두 곳의 교도소에는 중급학교졸업증서(실업학교졸업)를 획득할 수 있다. 대규모 시설에서는 문맹퇴치반, 기타 일반교양반, 외국어코스 등의 강좌가 개최된다.

VI.矯正緩和와 休暇

행형법 제11조에 따른 행형완화조치(유계호외부통근, 무계호외부통근, 유계호외출, 무계호외출)와 행형법 제13조 및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금으로부터의 휴가는 교정에 있어서 중요한 치우조치이다. 외출과 휴가를 통하여 특히 수형자의 사회적 접촉을 촉진하고 출소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유계호와 무계호의 외부통근은 재소자의 의미깊은 노동투입에 기여하고 소외에서의 직업 및 학과교육에의 참가를 가능하게 한다. 행형완화와 휴가의 허용을 위한 꼭 필요한 전제조건은 도주, 재범 기타 남용의 위협이 충분한 보안조치를 통하여 봉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내에서의 교정과정에서의 행동을 통하여 행형목표에 협력하는 것을 보여준 재소자만이 이들 완화조치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바이에른주의 개별 교도소의 책임있는 선발실무 덕택으로 행형완화와 휴가에서의 失敗率은 상대적으로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休 暇

1995년도에는 모두 27,969건의 휴가가 허가되었다. 휴가로부터 모두 150명의 재소자가 귀소거부 또는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미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 휴가건수의 0.54%에 해당한다. 실패율은 매년 점차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변화해오고 있다(1990 : 0.83%, 1991 : 0.78%, 1992 : 0.78%, 1993 : 0.75%, 1994 : 0.67%).

2. 無戒護外出

무계호외출은 1995년도에 모두 16,751건이 허가되었다. 106명의 재소자(= 0.63%)가 귀소거부 또는 자의는 아니지만 미귀하였다(1990 : 1.62%, 1991 : 1.95%, 1992 : 1.22%, 1993 : 1.02%, 1994 : 1.07%).

VII. 女子在所者の矯正

1. 在所者數

1995년도 바이에른주 교도소에는 일일평균 486명의 여자재소자가 수용되었다. 1996. 3. 31에는 285명의 여자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중 13명은 소녀수형자였고 198명은 미결구금자였다. 여자보안감호자는 현재는 없다.

2. 矯正施設

여자재소자는 11개의 교도소에 분산수용되어 있다. 원래 순수한 여자교도소였던 Aichach교도소에 대부분의 재소자가 수용될 수 있는데(351명의 수용능력), 공간을 구분하여 남자 수형자를 124명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München교도소의 여자구역은 수용능력의 80명이고, Nürnberg는 60명 수용이 가능하다. 여자구역이 시설되어 있는 나머지 8개 교도소에는 5명에서 23명까지의 여자재소자가 수용될 수 있다.

3. 管轄

3개월 이상의 자유형수형자는 전적으로 Aichach교도소에 수용된다. 여기에는 나아가 소년형벌 및 미결구금 그리고 임

신 6개월이 경과한 자유형수형자도 수용된다. 나머지 교도소들에는 단지 단기자유형수형자와 미결구금자가 수용된다. 한 가지 예외는 결핵환자가 이송되는 St. Georgen-Bayreuth교도소이다.

평균적으로 바이에른주의 여자재소자의 거의 90%는 Aichach교도소에 수용된다.

4. 收容

Aichach교도소에는 독거수용비율이 현재의 거의 75%에 달한다. 시설개축이 완료되면 거의 모든 여자재소자가 독거실에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München에는 독거수용비율이 3분의 2, Nürnberg는 가까스로 절반정도이다. 나머지 교도소의 소규모의 여자구역은 독거 및 혼거수용관계가 다양각색이다.

5. 教育 및 矯導作業

주된 교육 및 교도작업은 Aichach교도소에서 실시된다. 단지 매우 단기간의 자유형이 집행되는 다른 시설에서는 교도소 자체의 히드렛일을 하지 않는 여자재소자는 쉽게 배울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작업을 한다. 예컨대 전자부품조립, 재료견본복제제조, 바느질, 뜨개질, 손쉬운 조립.

6. 特殊問題

여자재소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은 남자재소자에 비하여 심한 집중수용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것은 여자재소

자를 위해서는 가족 및 기타 사회적인 관계의 유지 및 새로운 연결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인여자재소자의 약 34%는 기혼이고, 30%는 이혼하였다. 남자재소자의 이에 상응하는 수치는 24% 및 18%이다.

따라서 교도소는 여자재소자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접촉을 특별히 촉진하고 가능하면 그들 가족관계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이는 예컨대 혼인 및 가족상담, 자원봉사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나 후원자와의 연결, 가족적인 방문주선 그리고 적당한 재소자의 경우에는 행형완화나 휴가조치를 통하여 실시된다.

VIII. 少年矯正

1. 少年在所者數

바이에른에는 1983년까지는 변함없이 평균 약 1,000 내지 1,050명의 재소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었었다. 그 중에서 약 150명은 소년(Jugendliche), 550명은 청년(Heranwachsende), 그리고 350명은 21세 이상인 자이었다. 1984년에 바이에른주 소년교도소의 평균수용인원은 다시 1,000명 이하로 감소되었다. 특히 전체 인구감소의 결과로 1992년까지 수용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였다가, 그 뒤로 다시 증가하였다. 1996. 3. 31. 당시에 569명의 남자, 13명의 여자, 따라서 합계 582명의 소년재소자가 수용되어 있었다.

2. 少年矯正施設

소년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바이에른에는 3개의 소년교도소가 Laufen-Lebenau, Neuburg-Herrenwörth, Ebrach에 그리고 소녀수형자를 위하여 Aichach교도소에 하나의 청소년 구역(Jugendabteilung)이 각각 개설되어 있다.

3. 管轄

Aichach교도소의 청소년구역에서는 여자재소자에 대한 소년형벌이 집행된다. 그 밖에는 재소자의 연령, 전과, 형기, 부분적으로는 범죄행위 등에 따라서 다양한 시설에서의 관할이 정해진다.

이 경우 대체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비교적 젊은 수형자는 Laufen-Lebenau교도소
- 전과가 있거나 비교적 장기의 소년형벌을 복역하는 17세 이상인 자 그리고 21세 이상인 수형자는 Ebrach교도소
- 기타 수형자는 Neuburg-Herrenwörth교도소

17세 미만의 남자소년수형자는 형기나 범죄행위와 관계없이 Laufen-Lebenau교도소에 수용된다. 14 내지 15세의 수형자는 그곳의 별개의 구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 教育 및 矯導作業

1994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소년수형자의 절반 이하만이 학교졸업을 하였고 단지 약 4분의 1이상만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수형자의 약 5분의 3은 수감전에 아무 곳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젊은 수형자의 교육 및 재교육과 이들을 작업으로 인도하는 것은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 학과교육 또는 학교졸업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소년교도소에서는 실시된다. 실업학교수업, 초등상급학교졸업, 문맹 및 학습시체자를 위한 수업, 1996년도에는 307명 수용규모의 자격을 부여하는 직업교육시설이 소년교도소에 개설되어 있었다.

소년교정에 있어서 취업상황은 양호하다.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소년재소자는 교도작업에 취업할 수 있다.

5. 特殊한 在所者集團

1995. 3. 31. 소년인 외국인 수형자는 135명이었다. 이들은 통상적인 교정처우를 받고 있다.

6. 職員數

소년교정을 위하여는 약 400명의 직원이 활동하며, 이 중에는 상근으로 일하는 8명의 심리처우사, 10명의 교사, 15명의 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다.

IX. 少年拘禁

소년구금(Jugendarrest)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사법법(Jugendgerichtsgesetz)에 규정된 훈육처분(Zuchtmittel)일 뿐이다. 단기간의 엄격한 자유박탈을 통하여, 따라서 구금기간동안 이에 결부된 자기성찰에의 강제와 다양한 보호조치를 통하여 소년은 교육적인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한다. 소년구금

은 자유시간구금(Freizeitarrest)으로서는 1 내지 2회의 자유시간(보통은 주말에), 단기구금(Kurzarrest)으로서는 2 내지 4일 동안, 장기구금(Dauerarrest)으로서는 최단 1주에서 최장 4주까지 정해진다. 소년은 소년판사의 지시에 의거 추수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X. 藥物中毒在所者の處遇

바이에른의 교도소에서는 약물중독자는 분리 수용되지 않고 다른 재소자와 혼거 수용된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다른 재소자들과의 공동수용이 약물중독자의 처우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1995. 3. 31. 바이에른의 교도소에는 순전히 마약법(Betäubungsmittelgesetz)에 따른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가 890명 수용되어 있다(이는 전체 수형자의 12.34%에 해당한다). 실제로 약물중독 또는 약물로 위험에 처한 수형자의 수는 더욱 많을 것이다.

교도소에서의 약물중독자의 처우는 개별지역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부업이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의무지워진 전문가들이 행한다. 시설 외부의 처우 및 상담시설(약물중독상담소, 보건소, 민간의 금절시설)과의 협력에 특별한 가치가 부여된다. 이들 기관의 대표자들은 약물중독수형자의 상담과 치료를 위하여 교도소로 초치된다.

처우에 앞서 우선 의사의 지도하에 신체적인 자유가 박탈된다. 이어서 정신의학적 박탈이 뒤따른다. 이는 무엇보다도

개별적 및 집단치료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작업에의 배당이나 취업치료, 학과교육 또는 직업훈련, 시설 내의 주거그룹 및 자유시간그룹에의 편입 그리고 시설 외부의 적절한 자와의 가능한 연결의 강화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구금기간동안의 정신의학적 박탈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한, 석방후의 치료를 위하여 수형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시설에의 입원이 준비된다.

II. 續正費用

1996회계년도의 교정시설을 위한 예산계획은 다음과 같다.

- 전체수입은 8,310만마르크이고, 그중 7,720만마르크는 교도작업수입에 따른 것이다.
- 전체지출은 4억8,480만마르크이며, 그중 2억7,250만마르크는 인건비 1억1,200만마르크는 물적인 행정비용 3,280만마르크는 할당금 및 보조금 5,750만마르크는 건축비용 1,000만마르크는 투자비용 등으로 세분된다.

1995회계년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체수입은 8,360만마르크이고, 그중 7,690만마르크는 교도작업수입에 따른 것이다.
- 전체지출은 4억6,500만마르크이며, 그중 2억6,810만마르크는 인건비 1억 240만마르크는 물적인 행정비용

3,230만마르크는 할당금 및 보조금

5,430만마르크는 건축비용

790만마르크는 투자비용 등으로 세분된다.

따라서 보조금수요는 3억8,140만마르크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재소자 일인당 평균적인 구금비용은 1995년 바이에른주의 경우

일일구금비용 107.84DM

건축비용 13.86DM

합계 121,70DM에 달했다.

II. 人 事

1. 職員現況

현재 바이에른주의 교도소 보직의 수는 4,446이며(채용대기자는 제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補 職 現 況

(단위 : 자릿수, 명)

補 職 類 型	補職數
고위교정직 및 행정직	53
심리처우사	38
의사	35
사제 및 교회관계자	24
교사	44
사회복지사	103
상급교정직 및 행정직	152
법정된 職列에 속하지 않은 상급교정직	8
법정된 직렬에 속하지 않은 상급작업기사직	4
중급행정직(타자 및 전화교환직 포함)	300
중급작업기사직	357
단순작업기사직	28
일반교정직(간호직 포함)	3,239
일용잡금직(Arbeiter)	45
기타(상급기술직, 의료보조, 보모 등)	16

의사, 사제, 심리처우사, 교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내에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그 경우에 재소자수가 많다해도 상근직 인력의 투입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이른바 부업으로 일하는 인력도 이용된다.

칠회가 유보된 대기(준비)직(Vorbereitungsdienst)의 공무원수도 상급직대기자 8명, 일반교정직, 중급작업기사직 및 중급행정직의 대기자도 모두 150명에 달한다.

2. 職務

직업상의 사전교육으로 인하여(의사, 심리처우사, 목사, 교

사, 사회복지사, 행정직 등과 같이) 이미 직원의 직무범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한, 교도소직원은 다음의 활동영역에 투입된다.

가. 일반교정직

이들 직렬의 제복근무자들은 질서 및 보안영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처우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되고 그에 따라 처우직원으로서, 주거그룹교정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또한 자유시간활동(공작, 스포츠, 토론클럽 기타)등 다양한 영역에도 투입된다.

얼마전부터는 일반직에 속하는 여자직원도 남자재소자 교정에 투입되고 있다.

나. 작업기사직

바이에른에서는 수공분야에서 'マイスター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직원으로 채용된다: 그들은 소내작업을 지휘하거나 이에 동참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감독하며 직업훈련공장 등지에서 재소자의 교육을 하는 등의 일을 한다.

다. 간호직

교도소의 병실구역에는 예외없이 국가로부터 간호사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간호분야에 종사하는 130명의 직원이 일한다.

3. 新規採用現況

일반교정직에 대한 지원자수는 1993년 말 이래로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직렬에 채용되기 위한 적성확인에 있어서 언제나처럼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바이에른에는 오래전부터 심리치료사팀과 실무가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시행되어오고 있는 적성검사(Eignungsüberprüfung)에 의거 이와 같이 어려운 직무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해 낼 수 있다.

중급행정직 지원자의 모집상황은 1995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처음으로 다시 느슨해졌다. 중급작업기사직 분야에서는 이들 직렬에 채용되기 위한 충분한 지원자가 있다.

비록 많은 시설에서 개별적인 경우 부분적으로 공석이 된 자리가 다시 보임되기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그밖의 직렬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눈에 띄지 않는다.

4. 矯正職員에 대한 教育 및 再教育

가. 교육

Straubing에 있는 바이에른 교정 학교(Bayerische Justzvollzugsschule)는 1980년에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130명을 기숙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여기서는 일반교정직, 작업기사직, 중급행정직 등의 직렬에 속하는 새로운 인력을 교육시키고 있다.

교육기간은 일반교정직과 작업기사직은 18개월, 중급행정직은 2년이다. 1994채용년도의 시작과 함께 실무가의 전문이론가 교육의 보다 확실한 보완을 목표로 하여 일반교정직과 중급행정직에의 대기직을 위하여 교육단위의 시간적인 순번이 변경되었다.

상급행정직은 규정된 이론적인 것은 Starnberg에 있는 바이에른 공무원전문대학(Bayerische Beamtenhochschule)의 법학이나 교정학분야에서 교육을 받는다. 실무적인 교육은 각종 교도소에서 뒤따른다.

나. 재교육

매년 약 2,000명의 직원이 약 180 내지 200개소의 바이에른주 안에 있거나 또는 바이에른 밖에서 개최되는 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바이에른 자체에서는 매년 모두 약 1,800명 내지 2,000명 정도가 참가하는 연평균 약 120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여기에는 일반교정직을 위한 기본과정과 중급과정, 직원을 위한 감독프로그램, 주거그룹교정, 상담기법, 행장지도과제, 교도작업분야에서의 교육문제 등을 위한 특별과정, 미결구금교정과 사회치료 그리고 처우행형에 참여하는자를 위하여, 소년교정, 약물중독재소자의 처우, 위험하고 개선곤란 재소자교정에 투입된 직원들을 위한 특별과정, 호신술 및 체육지도자를 위한 과정 등이 있다. 작업기사를 위하여는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된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개별 직원을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재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개별재교육프로그램이다. 주로 중급작업기사직의 전문가나 기타 교도작업경영에 투입된 직원 또는 의사, 간호사 등이 파견된다. 외국인재소자수가 점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어 특히 동구권외국어의 학습도 지원을 받는다.

심리처우사, 의사, 목사, 사회복지사, 교사직 그리고 법률가 등과 같은 특수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그 직무에 상응하는

세미나를 통하여 교육을 받는다. 교도소장은 매년 2회 감독관청과 직무협의를 갖는다.

특수분야에서는 교정상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세분된 추가적인 교육 및 재교육계획(컴퓨터)이 실시되거나, 아니면 州의 다른 법무행정부서의 공무원교체근무를 통하여 필요한 재교육을 보장한다(사회치료시설의 직원).

그밖에 교도소 자체에서도 연간 2일(16시간) 감독관청이 중점을 두는 주재영역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모든 직원을 교육시켜야 한다.

XIII. 自願奉仕要員

바이에른주의 교도소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재소자의 처우에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도와주는 재소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키거나, 그들의 교육이나 직업적인 능력을 지원하거나 무엇보다도 재소자가 자유 세계로 편입하는 과정기에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의 활동영역에 동참한다. 21세 이상이고 교정목표달성을 협력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교정업무가 적성에 맞고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자원봉사자로 선임된다.

현재 바이에른주의 교정에는 약 900명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대화그룹, 스포츠그룹 기타 재소자의 자유시간활동그룹을 리드하며, 방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을 도우며 재소자의 무제호외출시에 동반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모든 교도소에는 그의 활동을 조

언하고 지원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공무원이 정해져 있다.

VII. 施設建築

1. 概要

교정에 있어서 건축정책의 과제는 우선 행형법이 요구하는 공간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우리 인간형상에 상용하는 교정을 실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나아가 바이에른 교정이 중요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시토교단수도원(Zisterzienerkloster)인 Ebrach, Kaisheim, Niederschönenfeld에 있는 기념물보호라는 과제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지난 15년동안 8억5천만마르크가 넘는 건축비를 지출했고 이 기간동안 다른 교정시설 말고도 많은 현대적인 구금장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교정은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적인 과제는 특히 예상되는 재소자수의 증가에 상용하는 수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2. 施設建築

1991. 8. 28. Würzburg에 598명 수용규모의 교도소가 1의 6,147만 마르크의 예산으로 착공되었다. 1단계 건축공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1997년에는 이 부분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2단계 건축공사도 이미 시작되었다.

3. 新築計劃

- Kempten(Allgäu)에 254명 수용규모의 교도소 건축 부지 확보는 종결되었다. 건설국의 공시에 의한 구체화를 위한 경쟁은 1995년에 결정되었다. 그 사이 예산회계서류(건축부분)작성을 위하여 설계위탁이 허락되었다.
- Landshut에 약 300명 수용규모의 교도소 건축 : 건축부지 확보를 위한 협상 진행중
- Augsburg에 약 350명 수용규모의 교도소 건축 : 건축부지 확보를 위한 협상 진행중
- Ingolstadt에 약 300명 수용규모의 교도소 건축 : 부지 확보절차 종료
- Kronach에 150명 수용규모의 교도소 건축 : 위치선정을 위한 협상 진행중



矯正資料

第17차 아시아·太平洋
矯政局長會議 隨行記

교정 260

(1997.12)

李 正 握

(法務部教化課, 矯正官)

<目 次>

- | | |
|--------------|------------|
| 1. 시작하는 말 | 3. 의제토의 내용 |
| 2. 회의연혁 및 특징 | 4. 끝맺는 말 |

1. 시작하는 말

제1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정국장회의가 1997. 9. 14(일)부터 9. 19(금)까지 말레이지아(쿠알라룸푸르)의 이스타나 호텔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금번회의에는 필자와 교정과 김안식 교감이 함께 法務部 矯政局長이신 金壽長 檢事長님을 수행하여 다녀왔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국에서 65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의제발표 및 토의, 교정 시설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 및 토론에 있어서 금번회의의 특징은 미리 선택된 의제 ① 교정현안에 관한 국가보고서 ② 직업훈련과 교도 작업 ③ 교정에 대한民間부분의 참여 ④ 교정직원 : 임용, 훈련 및 직무개발 등 4개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의제는 참가국 전체가 발표하고 나머지 3개 의제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제마다 몇몇 나라로 나누어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주제는 참가국이 질의응답 하는 형식으로 토의를 진행 시킨 점이다. 이러한 회의 방식에 따라 우리나라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에 임하였다.

특히, 금번회의의 “교정에 대한民间부분의 참여”라는 세 번째 의제에 있어서는 「교정시설의 민영화」란 주제를 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싱가폴 등의 대표들이 각각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태교정국장회의는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각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바, 금번 제17차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여기에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정행정 운영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 회의연혁 및 특징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정국장회의는 1978년에 당시 호주범죄학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의 소장이었던

故 William Cliford 교수와 당시 홍콩 교정국장이었던 Thomas Garner씨에 의하여 공동으로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에는 이 회의를 호주범죄학연구소의 교정관리자 국제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회의의 결과보고서를 당초 시드니에서 개최하려 했던 1980년도 제6차 유엔 범죄방지회의(The 6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reatment of Offenders)에 제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호주가 제6차 유엔 범죄방지회의의 개최제안을 철회함으로써 홍콩 교정국장의 제안에 의거, 제1차 아·태교정국장회의를 홍콩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호주범죄학 연구소는 사무국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 후 본회의는 199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금년 말레이지아 회의까지 17차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고, 호주 범죄학 연구소는 이 회의에 대한 조정, 업무지원 기타 전반적인 조언 등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제4차 뉴질랜드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래 계속 참가해오고 있다.

그동안 본 회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통과 관례가 확립되어 왔다. 이 회의가 현장이나 절차상의 규칙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매 회의마다 개최국이 피초청국가를 결정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본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의 교정관리자들의 항공운임이나 호텔 숙박비 등은 모두 자비로 하기 때문에 회의 개최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최국가는 회의의 공식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적절한 장소의 제공이나 환대를 베풀고 있으며 특히,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은 교정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있다. 금번 회의에서도 말레이지아의 승아이블로 교도소, 카장교도소, 카장여자교도소, 두선 다토 무라드 소년원 등에 대한 방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교정시설과 비교·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끝으로 본 회의에서 확립된 또 다른 전통 가운데 하나는 회의가 폐막되기 전에 회의 결과보고서의 초안을 준비하여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에 대한 수정과 동의를 통해 정식 보고서로 채택하여 각국에 보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3. 의제토의 내용

가. 제1의제 : 교정현안에 대한 국가보고서

금번 회의에 초대된 각국 대표들은 자신들의 교정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본 의제를 가지고 토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정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토의를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재정비, 정보기술의 도입과 그 효과, 수용인원의 고령화, 마약사범처우, 범법자에 대한 단계적 처우 등과 같은 것이었다.

(1) 법과 질서의 유지에 대한 교도소의 기여

솔로몬제도 대표는 그의 국가보고서에서 1980년대 중반 당시 자기 나라의 부당하고 형편없는 교도소 관리실태를 기술하여 모든 대표들의 관심을 끌었다. “교도소체계의 붕괴는

법과 질서의 파괴로 이어졌고 그것은 국가를 무정부상태의 파국으로 몰고 갔다. 솔로몬제도의 6개 교도소가 수형자들의 손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수도 혼니아라(Honiara) 및 주요 州와 市가 그들의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대규모의 폭력과 수많은 강간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고 하였다.

그 외 다른 국가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교도소 내에서의 폭력사태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캐나다에서는 여자교도소에서의 폭력사례를, 호주에서는 퀸랜드에 있는 새로운 중구 금교도소에서의 심각한 소란사태 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중 그 어떤 경우에도 일반 대중의 안전이나 사회의 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2) 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

많은 대표들이 교도소 과밀 수용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나라를 보면 싱가풀, 스리랑카, 부루나이, 필리핀, 홍콩, 인디아, 피지, 태국, 뉴질랜드, 말레이지아, 중국 그리고 호주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 참가한 모든 국가 중 반 이상이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도소 과밀 수용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홍콩의 경우는 법원에 의한 사회내 처우의 확대를, 호주는 사설교도소 도입과 같은 교정체계의 확대를 언급하였다. 태국은 보다 많은 교정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TV를 활용한 빠른 재판 절차와 사면 등을 확대함으로써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3) 정보기술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정조직을 잘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체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 대표는 교정국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심각한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두 곳의 데이터 백업센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대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수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술은 그 자체의 문제점을 함께 안고 온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너무나 바쁘게 범법자 관리체계에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형자를 면담하고 교정계획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보기술의 도입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4) 수형자의 고령화

대다수의 대표들은 수형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일반사회의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노쇠한 수형자와 그에 따른 문제로 인해 교도소 관리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일본의 보고서는 1987년부터 1996년 사이에 새로 입소한 40세 이상의 수형자 비율이 42.5%에서 47.8%로 증가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같은 기간동안 60세 이상 신입수

형자의 비율이 2.5%에서 6.2%로 상승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른 대표들은 수형자 연령의 상승화는 범세계적인 경향의 일부라고 하였다.

(5) 조직의 재편성

몇몇 대표들은 최근에 자신들의 조직 내에서 주요조직의 재편성이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뉴질랜드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성과 서비스의 공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나은 계약관리를 위한 기초를 닦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전략적 사업플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모든 상위직 직원에 대하여 그들의 봉급 20%는 특정한 업무 수행기준을 충족시켰을 때를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호주 대표도 그들의 6개주 및 2개 테리토리의 교정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중 몇몇의 경우에는 뉴질랜드처럼 일부 서비스 공급을 계약하기 위해 기초를 형성하는 조합이나 연합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한다.

(6) 마약사범의 처우

많은 대표들이 교도소 내에서의 마약사범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아마도 가장 분명한 것은 싱가풀의 정책일 것이다. 싱가풀 대표는 자국에서 최근에 입법에 고된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전에 마약생생센타의 경험이 있는 핵심 마약증독자는 장래에 5년에서 13년의 형을 살게 되고, 아울러 상당한 정도의 태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새로운 정책은 높은 싱가풀의 구금율을 더욱 끌어올리겠지만 이러한 조치가 일반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교도소 내에서의 마약사범의 처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표들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지역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마약류 같은 불법 약물의 취득이 구금형에 처하게 되는 범법행위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으로 마약사용자에 대한 처우 및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7) 결 론

앞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이슈들은 대표들이 제출하거나 발표한 것 중에서 선택한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교도소 과밀 수용문제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아태지역내 교정행정가들의 공동 관심사이다. “교도소가 없으면 경찰도 집에서 쉬어야 하고 법원도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솔로몬제도의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의제의 토론은 일반 사회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교도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대표들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 제2의제 : 직업훈련과 교도작업

금년 회의부터 새로워진 회의 진행방식에 따라 제한된 수의 국가가 본 의제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들 나라를 보면, 한

국, 일본, 인디아, 싱가풀, 그리고 스리랑카이다.

(1) 작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목적

대부분의 발표문은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이 많은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대표는 “교도작업활동이 노동이라는 그 자체의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보건, 교육의 견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싱가풀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수용자에게 어떤 종류의 작업을 부과하는 것은 관리 수단으로서도 유용한 것이다.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들은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적고 불법적인 활동에 개입할 여지가 적다.” 일본의 보고서도 “교도작업은 평온한 교정처우 환경의 유지에 기여하고 탈옥이나 자살과 같은 보안 사고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비록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교도소 환경의 향상 특히, 보안이나 통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논의의 일차적인 초점은 간생 및 재사회화에 두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회에서 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향상시키고 근로의 습성을 배양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의 보고서에서 “교도작업은 범법자를 재사회화시키는 교정의 근본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2)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의 유형

이와 같은 다양한 목적과 시각을 고려해 볼 때, 기본적인 문제는 수형자에게 출소 후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표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홍콩, 한국, 싱가풀,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이 상당히 도시화 및 산업화된 나라에서의 주요 문제는 도시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외 중국, 인디아, 태국, 스리랑카 및 말레이지아 같은 나라에서는 도시와 시골 거류자의 서로 다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의 형태는 지역적 차이와 다양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직업훈련이나 교도작업에서 일반적인 직종을 다루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직업훈련과 일반 작업사이에 분명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직업훈련과 작업의 구조, 조직 및 효용성 등에는 다양성이 있다. 가장 확실히 개발된 제도가 한국의 직업훈련제도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6개월부터 2년까지 실시된다. 그리고 수형자들이 관련 市·道에서 인정된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생산시설이 전국 교정 시설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교도소 외곽 담장과 내부 담 사이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교도작업은 대규모이며 1996년도 예산이 3천 7백만불에 이르고 있다.

(3) 훈련 및 작업프로그램과 “비직격 원칙”

일찍이 구금이 근대 교정제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 후 그것이 일반 사회에서 법을 준수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보다 더 안락해서는 안되고 또 더 매력적인 것이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것은 “비직격 원칙”으로 알려진 것으로 이 원칙과 앞에서 언급한 직업훈련의 목적 사이에는 잠재적인 상충요소가 있다. 첫 번째 어려운 분야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사정의 곤란이고, 그에 따른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실업률이 낮은 국가는 포괄적인 직업훈련이나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덜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교도작업은 주 5일, 1일 8시간의 작업 및 훈련프로그램에 95%의 수형자를 참가시키고 있다. 홍콩에서는 작업이 강제적이며, 성인은 일반적으로 생산작업에 종사하고 청소년수용자는 훈련센타에서 일상적인 일을 한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는 하루의 반은 교육, 또 다른 반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작업 및 직업훈련도 어느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고, 그와 같은 나라에서는 작업 및 훈련 프로그램의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직업훈련, 작업 그리고 국제협약

유엔피구금자처우 최저준칙은 모든 수형자들에게 작업에 취업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이 공공분야 내에서만 성취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

라서 많은 나라에서 직업훈련 및 작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크게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교도소 노동력의 민간분야 사용은 잠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회원국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협약은 “민간 수익”을 위해서 수형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자질있는 훈련교사의 채용

훌륭한 자질을 가진 훈련교사를 교도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말레이지아 대표는 자질이 높은 사람은 교도소 밖에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홍콩대표는 그들의 제도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업무에 대한 성취감과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좋은 보수 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싱가풀에서는 직업훈련교사가 교도소 내에서 일을 하게하기 위하여 “市價”를 상회하는 추가 수당을 자극제로서 지급한다고 하였다.

(6) 수형자에 대한 보수

수형자에 대한 보수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내에서 행정적인 조치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급액의 성격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지라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서, 다시 말해서 임금에 가까운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한국은 “작업상여금이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출소 후 수형자가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일본의 보고서도 작업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라 “수형자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출소 후 건전한 생활을 위한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여금”이라 하였다.

(7) 결 론

금번 회의에서는 직업훈련이나 교도작업 분야가 많은 여름에 직면해 있고 그 해결책이 쉽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또한 모든 나라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문제는 어떻게 질 높은 훈련과 일정한 수준의 작업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민간분야가 가장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제3의제 : 교정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

금번 회의의 의장 Datuk Mohd. Zaman Khan은 옵서버로서 이 특별한 주제에 대해 연설을 하도록 초대된 3개 주요 교정회사의 대표를 환영하면서 이 주제를 소개하였다.

(1) 민간 교정회사의 견해

(가) 호주 교정관리회사(ACM)

호주 교정관리회사(ACM)의 총 관리자는 이 주제의 토론